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순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2
----------	--------

발의연월일 : 2020년 2월 일

발 의 자 : 송순효, 황동현, 이충현, 박성호
강선영, 윤유선, 이의걸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을 조정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나. 새마을지도자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다.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조정 및 명확화 (안 제4조)
- 라. 효율적인 장학생 선정 (안 제6조)
- 마. 장학기금 확보 규정 정비 (안 제11조)
- 바. 유공자의 포상 (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2020. 2. 예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강서구 지회와 새마을지도자 강서구협의회, 새마을문고 강서구지부, 강서구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 강서구 새마을지도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단,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4조(장학금 지급대상) ①구청장은 새마을운동에 봉사하면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와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도자자녀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장학생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강서구협의회장 (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강서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강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 이라 한다)에 추천한다.

제6조(장학생 선정)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유공지도자

제7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7%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임기만료, 사직 등으로 새마을지도자 직에서 위촉 해제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기금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정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